



제418회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사서비스의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일정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육성	4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4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띠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 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정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육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①조직형태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②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등이며, ③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육성하고, 이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의2(공익적 제공기관 육성)</u> <u>①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u> <u>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u>

	<u>는 하나에 해당할 것</u> <u>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u> <u>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u> <u>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u> <u>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 <u>2. 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u> <u>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u> <u>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u> <u>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u> <u>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u>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u> <u>하는 요건을 갖출 것</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u> <u>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u> <u>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¹⁾을 제7조²⁾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①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³⁾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또는 사회적협동조합⁴⁾이고, ^②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약 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등이며, ^③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이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영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사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 고충처리 수단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인증 자체가 해당 사업체의 노무비용 및 이용요금 증가를 감수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조직형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③ (생략)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5. (생략)

과의 형평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및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공익적 제공기관만 우대 시 타당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②가사관리사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정을 도입할 경우 정부 인증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5